

의안번호	2216866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6.6.1.
추 계 번호	26B093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제4항) 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사업 2.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4. 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 6.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2(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재 고용노동부는 ‘제공기관 인증 및 제도운영’ 사업¹⁾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표 2] 현행 재정사업 현황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 일반용역비(210-14) 700,000,000원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50,000,000원×2개소+200,000,000원×1개소
-------------------	---

주: 2026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장래에 지정될 지원센터의 수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를 합리적으로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내역사업, 코드: 1231-300

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